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



경 기 도
(농업정책과)

목 차

I .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	3
II . 농어업 생산 · 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19
III .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38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팀 장 김규섭 주무관 박수아	031-8008-4472 031-8008-4420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현장지원단	과 장 용호진	031-220-8784

I. 사업개요

1. 목 적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지원
-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융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어업경영자금	24,000	24,000	38,732	36,393	41,314	39,600	37,800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표고버섯, 두릅, 약초류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
-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2.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자액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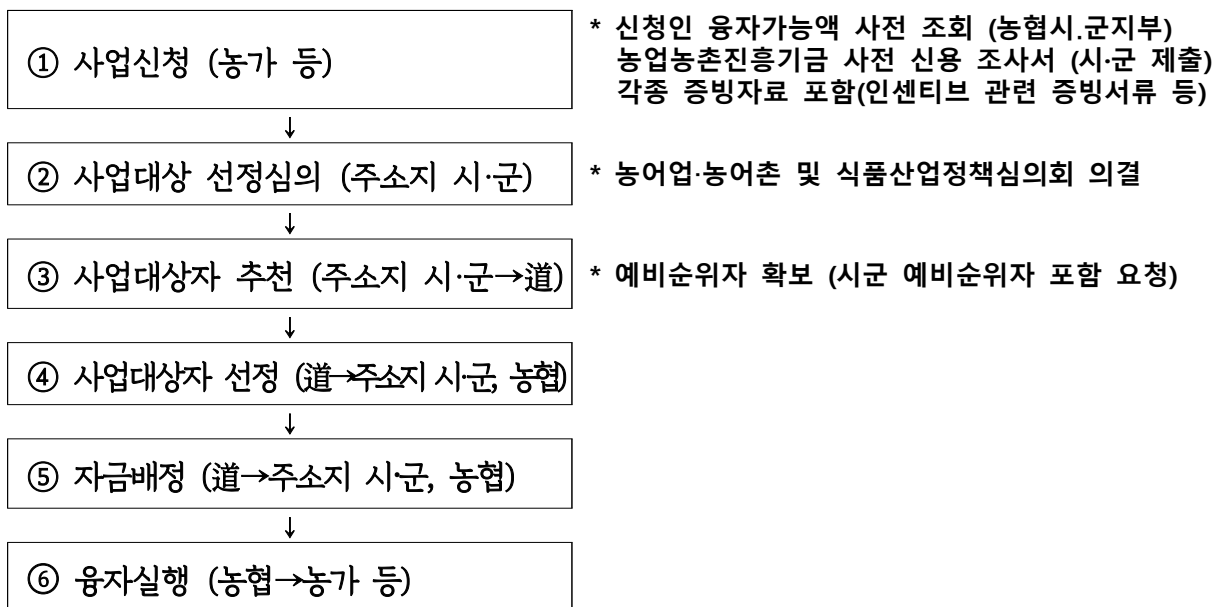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농협시.군지부)을 통해 확인 필요(신용·담보능력 확인)
- 별지서식 1-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

Ⅲ. 세부추진 사항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사업신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가능 * 각종 증빙자료 포함(인센티브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시·군에 접수된 해당 신청서는 사업 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접수 즉시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이송** 협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2. 대상자 추천

가. 대상자 추천기준 (시·군)

- 용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별첨2)에 따라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 * 예비순위자 포함하여 추천

- 기 용자금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
-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
- * 농업인대상 수상자 인센티브 부여 (동점 시 우선선정)

나. 추천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용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현재의 영농규모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출장 또는 읍면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
- 영농규모 평가 시 본인, 배우자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서면 계약 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 다만,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는 70%까지 인정
- 용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 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 서식1-1)
- * 대출 부적격,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용자) 신청 전 용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용자를 받은 자가 용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용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용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용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시장·군수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선정 배제
- 시장·군수는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으로 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 철저
-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

-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변경 요청
- * 서식 1-2.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확인
- *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 (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

○ 사업선정자 후순위자 결정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후순위자 선정 *도 변경 승인 확인 후 진행
- 최초 선정한 후순위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시·군 별 추가 사업자 선정은 道 승인 후 진행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절차준수

3. 자금배정 단계

가. 자금배정

- 자금배정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道에서 선정 후 배정하며, 시·군은 은행(농협)에서 대상자에게 융자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정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에게 포기를 확정하고 후순위자나 타 시·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배정자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 시·군 배정은 '23년 지원, 불용액, '24년 시·군 요청액 등 종합적 검토하여 배정

나. 융자실행

- 시장·군수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토록 통보
 - “대상자선정확인서(서식2)” 발급, “지원대상자명단(서식4)” 농협 통보
 - 선정순위와 관계없이 자금을 먼저 필요로 하는 농·어업인부터 지원
- 융자취급기관장은 지원대상자명단과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를 확인하고 융자 실행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융자금 수령 통보서를 받았음에도, 15일 이내 융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자(예비순위자 포함)에게 융자 조치
 - * 공문에 명시된 기간 내(15일 이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민원인에게 해당내용 통보)
- 법인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와 자금 활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자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4. 이행점검 단계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명단(서식4)”과 “선정확인서 발급대장(서식3)”을 작성 비치
- 융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융자실적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서식8)
- 도·시·군·융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도에 보고**
 - *융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융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회수사유 : 농업인 자격상실, 사업포기, 융자금 타 용도로 사용, 타 시·도 전출 등
- ※ (경기도)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군 제공(매분기)
- 시장·군수는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카드·엑셀 등에 기록 관리**(아래 예시 참조)

지원대상자			융자액 (천원)	대출 실행일	대출 만기일	점검내역				
주소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점검 일자	점검자	상환실태	현장 운영실태	회수사유 발생유무

- ※ 경영자금은 사업완료(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으며,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
-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
-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별첨1>

'24년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계획(안)

(단위 : 천원)

시 · 군	'23년 배정	'24년 배정(안)	비고
합 계	39,600,000	37,800,000	
수 원 시	60,000	60,000	
용 인 시	700,000	700,000	
고 양 시	1,200,000	1,200,000	
성 남 시	60,000	60,000	
화 성 시	4,800,000	4,800,000	
부 천 시	120,000	120,000	
남 양 주	300,000	300,000	
안 산 시	440,000	440,000	
평 택 시	3,100,000	3,100,000	
안 양 시	60,000	60,000	
시 흥 시	120,000	120,000	
김 포 시	900,000	900,000	
파 주 시	2,000,000	2,000,000	
의 정 부	0	0	
광 주 시	300,000	300,000	
광 명 시	120,000	120,000	
하 남 시	200,000	200,000	
군 포 시	60,000	60,000	
오 산 시	60,000	60,000	
양 주 시	500,000	500,000	
이 천 시	4,800,000	4,800,000	
구 리 시	60,000	60,000	
안 성 시	1,000,000	1,000,000	
의 왕 시	400,000	400,000	
포 천 시	2,900,000	2,900,000	
양 평 군	2,000,000	2,000,000	
여 주 시	500,000	500,000	
동 두 천	120,000	120,000	
과 천 시	120,000	120,000	
가 평 군	800,000	800,000	
연 천 군	2,500,000	2,500,000	
배정유보	9,300,000	7,500,000	

※ (주의) 시군별 배정액은 사업신청을 위한 추산금액으로 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시·군별 배정액은 확정금액이 아니므로 위 금액에 맞추어 농가별 신청금액 조정 불필요

<별첨2>

융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

1. 일반농업 분야

구 분	배 점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계	100			
영농경력 (10점)	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		10	
영농규모 (20점)	①일반농업	②시설농업(채소,화훼,특작류등)		
	4.0ha 이상	유리온실4,000평 및 비닐온실8,000평이상	20	
	3.0ha~4.0ha미만	유리온실3,000평 및 비닐온실6,000평이상	17~19	
	2.0ha~3.0ha미만	유리온실2,000평 및 비닐온실4,000평이상	14~16	
	1.0ha~2.0ha미만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이상	11~13	
	1.0ha미만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미만	10	
수출실적 (10점)	연간 5억이상		10	
	연간 3억이상 수출농가		8	
	연간 1억이상 수출농가		6	
	연간 1억미만 수출농가		4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농가		2	
고 품 질 생산농가 (25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생산출하 농가		25	
	친환경 인증(유기)		20	
	친환경 인증(무농약)		15	
	규격포장 출하농가		10	
	실적이 없으나 향후 위 4개 항목을 이행할 계획이 있는 농가		5	
경영장부 기록여부 (10점)	일별, 주별, 전산프로그램기장, 일별복식부기		10	
	주별 복식부기		8	
	일별 간이기록장, 월별 전산프로그램 기장		6	
	월별 간이기록장등		4	
	미 기록		0	
기술개발 (10점)	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5	합산
	새로운 농기구 등 적정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5	
수상경력 (10점)	농어업관련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10	
	농어업관련 시장·군수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8	
	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 농협조합장 표창 수상자(단체)		6	
	일반 농가(미 수상자)		0	
자격증 (5점)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1개월 이상)		5	

2. 축산분야

구 분	배 점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계	100		
축산경력 (10점)	가축사육 경력 1년 단위로 2점 영농후계자 가점 5점 ※ 가점포함 최대 10점을 넘을 순 없음	10	
사육규모 (15점)	한우 200두 이상, 젖소 100두 이상, 돼지 2,000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15	
	한우 100두 이상, 젖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닭 2만수 이상	13	
	한우 50두 이상, 젖소 30두 이상, 돼지 500두 이상, 닭 1만수 이상	11	
	한우 50두 미만, 젖소 3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9	
	※ 기타가축은 축종에 따라 중·소가축 기준에 준함		
축산업 허가(등록) (10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참여농가	10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	
	미허가(등록) 농가이나 향후 축산업 허가(등록) 추진중인 농가	6	
고 품 질 축 산 물 생산농가 (20점)	농장 HACCP 및 경기도지사 G마크 인증농가(단체), 경기도 가축 행복 인증농가	20	
	브랜드 축산물 생산농가(단체)	15	
	일반 사육농가	10	
자급사료 이용 (10점)	한우, 젖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30% 이상	10	
	한우, 젖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20% 이상	8	
	한우, 젖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10% 이상	6	
	한우, 젖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10% 미만	4	
	※ 돼지, 가금, 기타가축은 5점 적용		
생산주체 (10점)	농·축산업협동조합(업종 축협포함)	10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	8	
	축산 협업체, 단지 등	7	
	개별농가	5	
기술개발 (10점)	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축산 농가(단체)	5	합산
	새로운 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축산 농가(단체)	5	
수상경력 (10점)	축산관련으로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10	
	축산관련으로 시장, 군수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8	
	공인된 축산관련 단체, 축협조합장 수상자(단체)	6	
	일반 농가(미 수상자)	0	
자격증 (5점)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1개월 이상)	5	

3. 수산분야

구 분	배 점 기 준				배점	평가 점수
계					100	
영어경력 (20점)	신청사업 경력을 1년 단위로 1점씩 가산				20	
영어규모 (10점)	어선어업	해면양식어업 (축제식포함)	육상양식(해면)	내수면양식		
	10톤이상	3ha이상	350평이상	550평이상	10	
	5~10톤	2.5~3.0ha	250~350평	450~550평	8	
	2~5톤	2~2.5ha	200~250평	400~450평	6	
	1~2톤	1.5~2.0ha	150~200평	300~400평	4	
	1톤미만	1.5ha미만	150평미만	300평미만	2	
교육훈련 (20점)	정부·자치단체·교육기관·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선도어업 경영체에서 교육을 받은 1일당 1점씩 가산				20	
경영장부 기록여부 (15점)	일별·주별·전산프로그램기장·일별복식부기				15	
	주별복식부기				13	
	일별간이기록장·월별전산프로그램기장				11	
	월별간이기록장 등				9	
	미기록				0	
수출실적 (10점)	연간 1천만원 이상 수출어가				10	
	연간 1천만원 이하 수출어가				8	
	수출실적이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어가				6	
기술개발 (10점)	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				5	합산
	새로운 어구나 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				5	
수상경력 (10점)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어업인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적이 없는 어업인				10	
	시장·군수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어업인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적이 없는 어업인				5	
자격증 (5점)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1개월 이상)				5	

<서식 1>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농어업경영자금)

(접수번호 :)

1. 신청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2. 신청내용

신청금액	금	원 (₩)	자금사용시기	월(상, 하)
영농작목			영농규모	
자금용도 (요약)				

※ 영농조합 등에서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

3. 당해연도 경영계획

①조수입 (예상)	②경 영 비			③자가노력비	④연소득 ①-(②+③)
	자재구입비	인건비	계		
천원					

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 (조합)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영농조합 등 단체에서 신청 시 조합원 연명날인 첨부)

() 시장·군수 귀하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2024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신청인 성명 : (서명)
--

2024년 월 일

() 시군지부장 (인)

<서식 1-2>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시군보관용)

(발급번호 : 호)

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

대상자 주소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융자결정금액	금 원 (₩)				
용 도					
비 고					

2024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절.....취.....선.....

(금융기관 제출용)

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

대상자 주소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융자결정금액	금 원(₩)				
용 도					
비 고					

2024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 농협장 귀하

※ 이 확인서와 융자 신청서류를 융자취급기관(해당농협)에 제출하십시오.

<서식3>

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발급대장

[illegible]

※ 반드시 시·군에 비치

<서식 4>

'24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추천 명단

(단위 : 천원)

순위	분야	대상농가/ 농업법인			영농규모		사전 검토액	신청액	확정액	자금소요 시 기
		주 소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면적(ha)	작목/품 목/업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예비										
1										
예비										
2										
예비										
예비										
예비										

※ 분야는 일반농업, 축산, 수산 등 작성하고 예비순위자 작성 (별첨 엑셀자료 참조)

<서식 5>

'24년 농어업경영자금 대상자 추천결과 보고

(단위 : 천원)

[illegible]

<서식 6>

'24년 농어업경영자금 배정요구서(월 1회)

(시·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배정	집행액	금회신청	배정누계	배정잔액
계						
일반농업						
축 산						
수 산						

※ 긴급자금이 필요시 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배정요구

<서식 7>

'24년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실적 보고(12월말 기준)

(시·군)

(단위 : 천원)

구 분	배 정 실 적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미집행사유
	농가수	배정액	농가수	집행액	비율		
계							
일반농업							
축 산							
수 산							

<서식 8> (응자취급기관 → 시·군)

'24년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실행 실적

(시·군)

(단위 : 천원)

[illegible]

<서식 9>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 道)

'24년 농어업경영자금 대출 실적

(단위 : 천원)

[illegible]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팀장 김규섭 주무관 박수아	031-8008-4472 031-8008-4420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현장지원단	과장 용호진	031-220-8784

I. 사업개요

1. 목 적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농어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
-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 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사업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용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8,000	13,000	14,657	8,220	6,545	9,500	6,500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농업법인은 지원 불가)
- 해당분야 예외적용 : 임업(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 (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 '23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4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단, 예산범위 내 시행)

※ 지원제외 대상

-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

2.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융자액 : 농가 1억원 이내 *농업법인은 지원 불가
 -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체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 청년 농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상환조건 완화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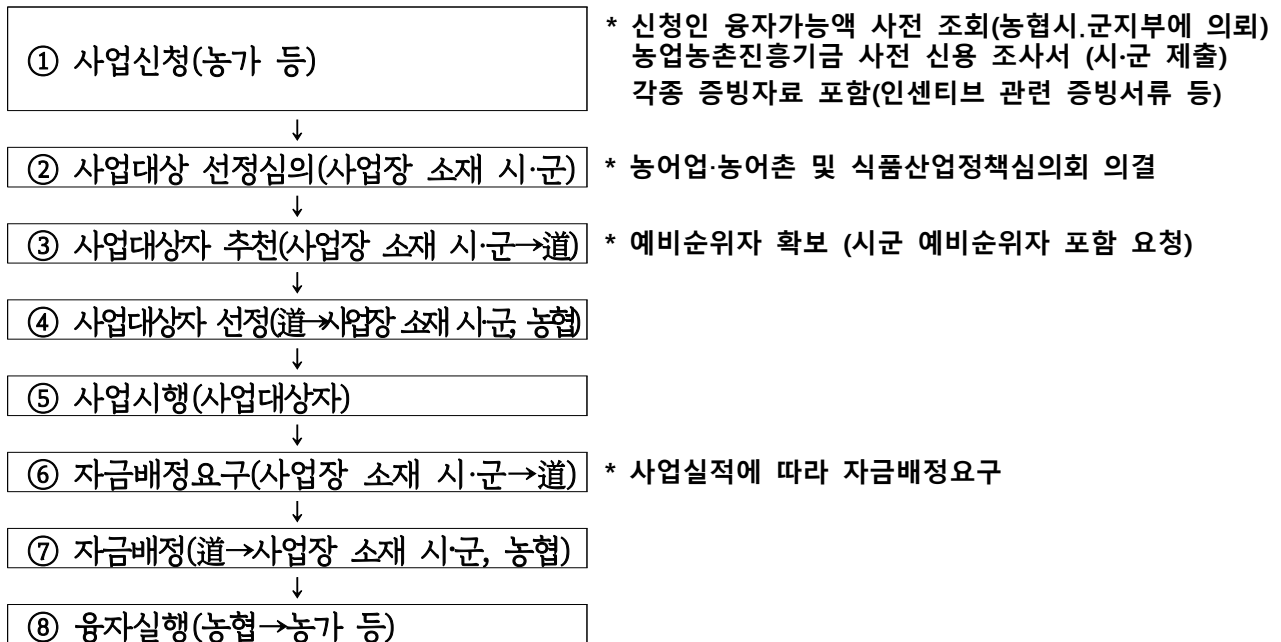
-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농협시.군지부)을 통해 확인 필요(신용·담보능력 확인)
 - 별지서식 1-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
- * 종묘구입, 가축입식 등은 농신보에서는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 철저

3. 대상사업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물설치, 묘목·화훼·종묘 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가축 입식(모돈구입 등)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Ⅲ. 세부추진 사항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 사업신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가능 * 각종 증빙자료 포함(인센티브 관련 증빙서류 등)
- *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된 해당 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접수 즉시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시·군으로 이송](#) 협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2. 대상자 추천

가. 대상자 추천기준(시군)

- 용자금 신청자는 신청 전 금융기관(농협)으로부터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용자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 *예비순위자 포함하여 추천
- 기 용자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
-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나. 추천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용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현재의 영농규모)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현지출장 또는 읍면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
- * 특히, 하우스 설치 및 가축입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영농규모(가축 수, 시설면적 규모 등)를 확인 기록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시 대조 확인

- 영농규모 평가 시 본인, 배우자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서면 계약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 다만, 5년 이상 장기계약 한 임차농지는 70%까지 인정
- 융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 서식1-1)
 - * 사업완료 후 대출 부적격,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융자) 신청 전 융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
 -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는 종묘구입, 가축입식 등은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사전에 안내 철저(담보필요)
-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농지매매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위반 등 불법사항, 지원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융자금을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융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안내 부적정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시장·군수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수시 확인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
- 예외: '23년 시설자금 사업선정자 중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원(경영자금 해당없음)

2023년도 시설자금 선정자 중 ' 23년 대출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 24년 수요조사 시 기성고가 70% 이상으로 올해 완공이 가능한 자는 시·군 추천을 거쳐 지원

- * 예산범위 내 지원 (예산 부족 시 지원 불가)
- * 허위보고 시 패널티 부여 (' 24년도 사업 신청 시 후 순위 배치)

- 시장·군수는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적정 개입으로 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등의 문제 발생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검토 철저
-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
 -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변경 요청
 - * 서식 1-2.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확인

*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 (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

○ 사업선정자 후순위자 결정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도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후순위자 선정 *도 변경 승인 확인 후 진행
- 최초 선정한 후순위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시·군 별 추가 사업자 선정은 道 승인 후 진행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절차준수

3. 자금배정 단계

가. 자금배정

- 시·군 :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사업실적확인서<서식3> 및 증빙자료를 道 및 융자기관에 제출
 - 자금배정은 매월 1일, 15일에 배정할 계획으로, 융자실행이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여 배정된 자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 자금배정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다음 배정일에 배정
- 道 : 사업실적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따라 사업실적 확인 후 융자금 배정

나. 융자실행

- 시장·군수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토록 통보
- 농협 : 시·군 사업실적확인서와 道 융자금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실행

4. 이행점검 단계

- 도-시·군-융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道에 보고
 - *융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융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道에 보고
 - *회수사유 : 농업인 자격상실, 사업포기, 융자금 타 용도로 사용, 타 시·도 전출 등
 - ※ (경기도)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군 제공(매분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과정을 전·중·후로 나누어 사진기록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및 관리카드 등에 기록 관리(서식 8)

-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
-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융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융자실적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서식7>
- 사업 추진 시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허가, 신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 조치

「별첨 1」

’24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금 지원계획(안)

(단위 : 천원)

시 · 군	’23년 배정	’24년 배정(안)	비고
합 계	9,500,000	6,500,000	
수 원 시	0	0	
용 인 시	200,000	200,000	
고 양 시	400,000	400,000	
성 남 시	0	0	
화 성 시	700,000	700,000	
부 천 시	0	0	
남 양 주	100,000	100,000	
안 산 시	100,000	100,000	
평택 시	200,000	200,000	
안 양 시	0	0	
시 흥 시	0	0	
김 포 시	200,000	200,000	
파 주 시	400,000	400,000	
의 정 부	0	0	
광 주 시	100,000	100,000	
광 명 시	0	0	
하 남 시	0	0	
군 포 시	0	0	
오 산 시	0	0	
양 주 시	200,000	200,000	
이 천 시	400,000	400,000	
구 리 시	0	0	
안 성 시	100,000	100,000	
의 왕 시	0	0	
포 천 시	200,000	200,000	
양 평 군	400,000	400,000	
여 주 시	200,000	200,000	
동 두 천	0	0	
과 천 시	0	0	
가 평 군	300,000	300,000	
연 천 군	300,000	300,000	
배정유보	5,000,000	2,000,000	

※ (주의) 시·군별 배정액은 사업신청을 위한 추산금액으로 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시·군별 배정액은 확정금액이 아니므로 위 금액에 맞추어 농가별 신청금액 조정 불필요

「별첨 2」

평가방법 및 배점

구 분	배 점	점 수	비 고
영농정착의욕 및 지역사회기여도 (15점)	영농정착의욕	3~5	상(5점) 중(4점) 하(3점) 각 점수 합산
	사업계획의 타당성	3~5	
	지역사회기여도	3~5	
자경영농규모 (20점)	2.0ha이상	20	
	1.5ha이상 ~ 2.0ha미만	19~17	
	1.0ha이상 ~ 1.5ha미만	16~14	
	0.5ha이상 ~ 1.0ha미만	13~11	
	0.5ha미만	10	
영농경력 (10점)	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	1~10	
농수산계학력 (10점)	농수산계대학졸업자	10	
	농수산계전문대학졸업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8	
	일반대학 및 농수산계고등학교졸업자	6	
	기타학교졸업자	4	
학습단체활동 (10점) ○ 영농후계자 ○ 농어촌지도자 ○ 작목반참여	2종참여	10	
	1종참여	5	
	미참여	0	
수상경력 (10점)	도지사 이상 표창 수상자(단체)	10	
	시장·군수 이상 표창 수상자(단체)	8	
	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 수상자, 농협조합장(단체)	6	
	수상경력 없음	0	
기술개발 (10점)	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5	합산
	새로운 농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5	
고품질 생산농가 (10점)	G마크 생산 출하 농가	10	
	친환경 인증, 품질인증(HACCP 등) 농가	8	
	규격포장 출하 농가	5	
	일반 농가	3	
자격증(5점)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1개월 이상)	5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분 품목	0.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ha미 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 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 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 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0	0.70~1.40	1.40~2.10	2.10~2.80	2.80
노지채소	0.33	0.33~0.65	0.65~0.98	0.98~1.31	1.31
시설엽근채	0.12	0.12~0.24	0.24~0.36	0.36~0.48	0.48
시설과채	0.08	0.08~0.16	0.16~0.24	0.24~0.32	0.32
노지과수	0.23	0.23~0.45	0.45~0.68	0.68~0.91	0.91
시설과수	0.08	0.08~0.16	0.16~0.25	0.25~0.33	0.33
화 훼	0.05	0.05~0.09	0.09~0.14	0.14~0.19	0.19
약용작물	0.14	0.14~0.27	0.27~0.41	0.41~0.54	0.54
특용작물	0.72	0.72~1.43	1.43~2.15	2.15~2.87	2.87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09	0.09~0.12	0.12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한우(번식)	18	18 ~ 36	36 ~ 54	54 ~ 72	72
한 육 우	10	10~20	20~31	31 ~ 41	41
낙 농	2	2~5	5~7	7 ~ 10	10
양돈(비육)	36	36~73	73~109	109 ~ 145	145
양돈(번식)	8	8~15	15~23	23 ~ 31	31
양계(산란)	756	756~1,512	1,512~2,268	1,512~2,268	2,268
양계(육계)	2,459	2,459~4,918	4,918~7,378	7,378~9,837	9,837

※ 세부적인 사항은 농축산물 표준소득(농진청)자료 참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 외의 기반은 50% 인정

「별첨 3」

용자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

공통서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담보대출일 경우에는 인감도장, 그 외에는 사용도장)			
담보대출	제출서류	수량	발급처	비고
	○ 등기부등본(대지, 건물) ○ 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 또는 국토이용확인원 ○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등기관리증(사본)	각 1통 1통 각 1통 1통 입주인전원	등기소 구청(군청) 구청, 읍, 면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본인보관본 본인보관본	아파트및집단주택제외
농신보 대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증(사본)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농지원부(자경농) ○ 임대차계약서(임대차농)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통	구청, 읍, 면사무소 FAX민원 (1577-1000) 구청, 읍, 면사무소 세무서 구청, 읍, 면사무소	

※ 용자신청 전 신청예정인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정책대부계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위 제출서류 중 일부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 시·군 지부에 문의

<서식 1>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 영농규모

구 분	영 농 규 모											주작목 현황	
	농 지 규 모 (ha)						축 산 (두)				어선 어업 (톤)	주 작목 및 지역 특산물명	규모
	계	전	답	초지	과수	양식장	젖소	한우 비육우	양돈	기타			
면적및 규모													

2. 경 력

영농경력	최종학력	영농후계자 지정년도	농어촌 지도자 가입년도	청년창업농 지정년도	작 목 반 활동사항	자격증 및 기타경력	
						내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학교명 졸업년도	년	년	년	작목반명: 가입년도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비		
			계	융자금	자부담
계		※ 분기별계획 첨부			

* 시·군에서는 분기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도포기자 발생 사전 방지

4. 기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수혜여부

(단위 : 천원)

수혜년도	사업명	융자금액	상환액	미상환액	비고

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조합)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성별 :

성 명 :

인

〇〇시장·군수 귀하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신청인 성명 : (서명)
--

2024년 월 일

() 시군지부장 (인)

<서식 1-2>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 작목	영농 규모	평가 총점	순위	비 고
※ 종합의견 :							

※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에 의거 평가 후 순위결정(후순위자 포함할 것)

2024년 월 일

○○ 시장·군수 직인

사업실적(추진계획) 확인 통보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3. 사업계획 (행정기관 승인분)

○사 업 량 :

○사 업 내 용 :

○사업장 소재지 :

○사 업 비 :

(단위 : 원)

총 투자계획 (가 =나+다)	용 자 (나)	자 부 담 (다)	비 고

4. 사업실적

(단위 : 원)

총투자계획 (가)	사 업 추 진 실 적			
	대금지급분 (라)	대금미지급분 (마)	계 (바=라+마)	비율 (바 / 가)

주 : 대금미지급분은 외상구입(설치)등으로 사업에 투자된 금액

위와 같이 확인 통보 합니다.

2024. . .

확인자 ○○ 시장·군수

직인

NH농협은행 ○○ 시·군지부장 귀하

경기도지사 귀하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농가 명단

(○○시·군)

(단위 : 천원)

[illegible]

※ 반드시 엑셀로 작성 (별첨 엑셀자료 참조)

<서식 5>

'24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배정요구서

(시·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배정	집행액	금회신청	배정누계	배정잔액
계						
일반농업						
축 산						
수 산						

<서식 6>

'24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실적 보고(12월말 기준)

(시·군)

(단위 : 천원)

구 분	배 정 실 적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미집행사유
	농가수	배정액	농가수	집행액	비율		
계							
일반농업							
축 산							
수 산							

<서식 7> (응자취급기관 → 시·군)

'24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실행 실적

(시·군)

(단위 : 천원)

[illegible]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관리카드

☐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 융자금 지원(대출) 현황

지원 구분	융자지원 정보			사업량	대출 실행일	상환 만기일
	확정액	지급액	상환방법			
시설자금						

☐ 사업계획 및 실적

계획, 실적, 착공,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사업추진과정(전·중·후) 사진 포함
--

☐ 사업추진 점검내역

점검일자	점검자	점 검 결 과
00.00.00. ()	○○○	○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기재 ○ 공사(식재)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 기타 특이사항

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팀 장 김규섭 주무관 박수아	031-8008-4472 031-8008-4420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현장지원단	과 장 용호진	031-220-8784

I. 사업개요

1. 목 적

- 도내 농림수산물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식품경영체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도내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식품경영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농식품경영체(융자)	3,000	3,000	1,000	700	500	700	700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도내 농식품 경영체로 도에서 정한 일정한 지원조건(지원조건 참조)에 해당 되는 법인
 - “농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며, 법인화된 업체로 정함
- *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농림수산물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물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물사업자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지원조건

가. 공통사항

○ 시설자금 운용금액

- 융자한도액 : 최대 5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완료에 따라 융자 실행
-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경영자금 운용금액

- 융자한도액 : 최대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 2년 만기상환
-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나. 세부 지원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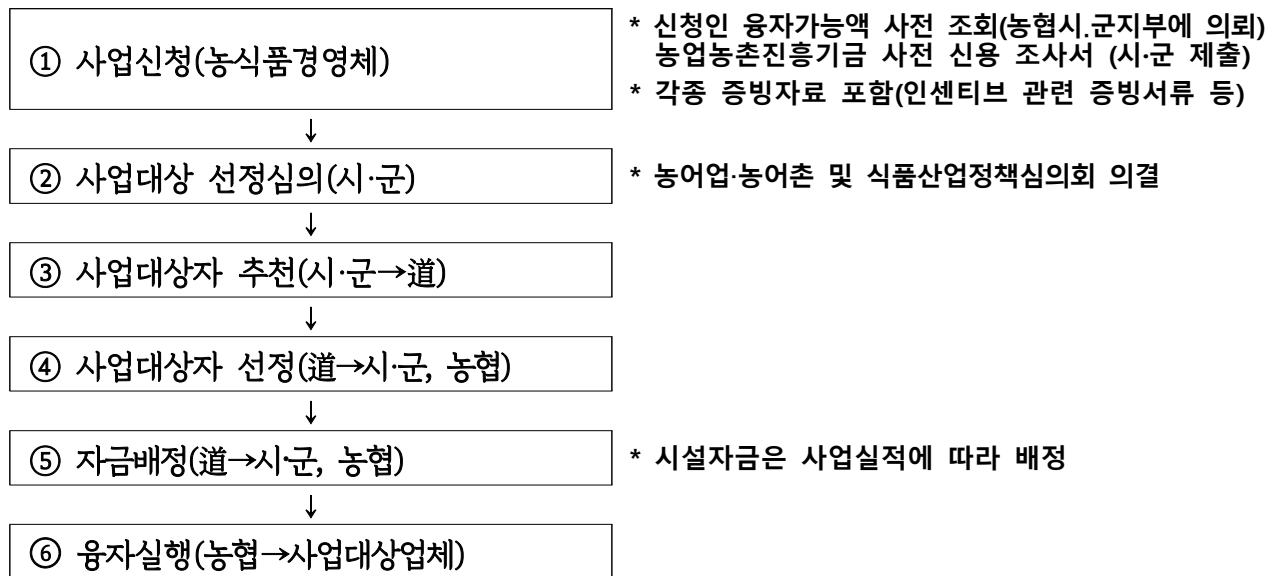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농식품산업
- 위 식품산업으로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농식품산업
- ※ “식품산업”의 정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규정함

3. 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농·수산물을 원료로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부지매입비(시설설치용도)
- 경영자금 : 원료 농산물 구입 등 운영자금

Ⅲ. 세부추진 사항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2. 대상자 추천

가. 대상자 추천기준(시군)

- 용자지원대상자 자체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
(예비순위자도 명기)
-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농림수산물 관련 산업 법인
(농림수산물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기 용자 수혜자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후 순위 적용
- 시장·군수는 용자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업체규모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현지출장 확인
- 시장·군수는 용자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농지매매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의 위반 등 불법사항, 지원목적 외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 받은 용자금을 즉시 회수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용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

- 융자금 신청자가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 불가함에 유의(사전 안내 및 동의 서명 확인, 서식 3)
 - *사업완료 후 대출 부적격, 담보 부족으로 사업포기 및 대출금액 축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융자) 신청 전 융자가능 금액 확인 철저(사전 신용조사서 등 확인)
- 반드시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 후 추천
- 대상자 추천 우선순위
 - 유망중소기업·벤처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녹색인증기업
 - 기업·농업상생기업 또는 공유경제 실천 기업
 - 경기 농산물을 원료로 생산·가공·제조·조리 등을 하는 기업(비율이 높을수록 선순위)
 - 경기 농산물(또는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신기술·신상품을 개발하는 기업
 - G마크 인증 품목 이용, 지역특화 품목 및 지역 농특산물 이용 업체
- 단순히 원료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등 단순가공 업체, 전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선정 배제
- 지원대상자 사업내용 변경
 -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업선정자의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변경 요청
 - * 서식 1-2.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확인
 - * 당초 사업량 범위 내 변경 (당초 선정된 사업량을 초과하여 변경요청 불가)
- 사업선정자 후순위자 결정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변경승인 요청하고 후순위자 선정 *도 변경 승인 확인 후 진행
 - 최초 선정한 후순위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시·군 별 추가 사업자 선정은 道 승인 후 진행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절차준수

4. 자금배정 단계

가. 자금배정

- 시·군
 - 경영자금은 대상자 선정과 함께 일괄 자금 배정
 - 시설자금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사업실적확인서(서식 4) 및 증빙자료를 道 및 융자기관에 제출

- 시설 자금배정은 매월 1일, 15일에 배정할 계획으로, 용자실행이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여 배정된 자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자금배정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다음 배정일에 배정

- 道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결과에 따라 용자금 배정

나. 용자실행

- 시장·군수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용자대상자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자금을 수령토록 통보
- 농협 : 시·군 사업실적확인서와 道 용자금 배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용자 실행

5. 이행점검 단계

- 도·시·군·용자취급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정 지원 사전 차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 道에 보고
 - *용자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미실행 용자금 불용 최소화 조치
 - 시장·군수는 용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자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道에 보고
 - *회수사유 : 농업인 자격상실, 사업포기, 용자금 타 용도로 사용, 타 시·도 전출 등
- ※ (경기도) 지원제한 대상 취합하여 전체 시·군 제공(매분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과정을 전·중·후로 나누어 사진기록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및 관리카드 등에 기록 관리(서식 6)
 - 경영자금은 사업완료(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으며,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
 -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용자금 회수 조치 등 행정조치
 - 용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반납한 자는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용자취급기관장은 월별 용자실적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서식5)
- 사업 추진 시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허가, 신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 조치

<서식 1>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신청액		백만원									
일 반 현 황	업체명				대표자				홈페이지				
	주 소								E-mail				
	연락처	전화 :			Fax :			휴대폰 :					
	주 생산품	품 목	계										
		생산량(톤)											
경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생산자단체, 기타								설립년도				
황	시설 규모 (㎡)	부지	건물	오피수 (톤)	주요설비	시설투자 (백만원)	계	보조	융자	자 담 (실투자비)			
운 영 실 태	가동 실적	연간생산 능력(톤)	연 간 가동일수	연 간 생산량(톤)	총매출액 (백만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수출국					
	원료 조달	계	자가생산	개별농가	산지조합	산지수집상	도매시장	기타					
		100 %	%	%	%	%	%	% %					
	농산물 사용량 (연간)	톤	원산지		경기도(%), 타 지역(%),								
			경기도 인증		G마크(%), 지역명품(%), 타지역 및 비인증(%)								
	판매 방법	계	직 거 래			소 매 상				도 매 상			
			방문객 관광객	직판점 전시 판매장	통신 판매	백화점 할인점	농수 축협	식당	기타	종합 도매업체	특정 도매업체	기타	
	비용 (백만원)	계	원료구입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판매·홍보		기타		
고용현황		상용직		명		일용직		명					
우선순위 대상(√)		① 유망·벤처·수출유망중소기업 ② 기업·농업상생기업 또는 공유경제실천기업 ③ 경기농산물 원료사용(%), ④ 신기술,신상품 개발 기업 ⑤ 기타()											

본인은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업체 주 소 :
대 표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구분	사 업 명	사 업 계 획	소 요 사 업 비		
			계	융자금	자부담
계					
		※ 시설자금 세부계획서 별도 첨부 - 시설자금, 경영자금 구분 작성			

위와 같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업체 주 소 :

대 표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1-2>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체 추천서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업종	주생산품	순위	비 고
※ 종합의견 :						

2024년 월 일

〇〇 시장·군수 직인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업체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생산자단체등·회 사·기타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대출 신청	천원	자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신청인 성명 : (서명)

2024년 월 일

()농협은행 시·군지부장 (인)

사업실적(추진계획) 확인 통보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3. 사업계획 (행정기관 승인분)

○사 업 량 :

○사 업 내 용 :

○사업장 소재지 :

○사 업 비 :

(단위 : 원)

총 투자계획 (가 =나+다)	응 자 (나)	자 부 담 (다)	비 고

4. 사업실적

(단위 : 원)

총투자계획 (가)	사 업 추 진 실 적			
	대금지급분 (라)	대금미지급분 (마)	계 (바=라+마)	비율 (바 / 가)

주 : 대금 미 지급분은 외상구입(설치)등으로 사업에 투자된 금액

위와 같이 확인 통보 합니다.

2024. . .

확인자 ○○ 시장·군수

직인

NH농협은행 ○○ 시·군지부장 귀하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5> (응자취급기관 → 시·군)

'24년 농식품경영체 융자실행 실적

(시·군)

(단위 : 천원)

[illegible]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관리카드

☐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 융자금 지원(대출) 현황

지원 구분	융자지원 정보			사업량	대출 실행일	상환 만기일
	확정액	지급액	상환방법			
시설/경영자금						

☐ 사업계획 및 실적

계획, 실적, 착공,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사업추진과정(전·중·후) 사진 포함
--

☐ 사업추진 점검내역

점검일자	점검자	점 검 결 과
00.00.00. ()	○○○	○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기재 ○ 공사(식재)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 기타 특이사항

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
